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서 제출〉

■ 권향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005호)

2026. 7.

국회 운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향엽 · 이주희 · 문진석 · 박용갑 · 염태영 · 이기현
장종태 · 김 윤 · 채현일 · 박지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6. 5. 18.

3. 회 부 일 : 2026. 5. 19.

※ 의안번호 : 1900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를 마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은 보고서에 따른 시정요구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국정감사로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당한 인적·행정적 자원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국정감사의 결과보고서 채택률은 약 70%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따라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못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미국 연방의회의 경우, 상·하원 상임위원회는 매 의회(2년 주

기) 종료 시점마다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위원회 활동보고서(Committee Activity Reports)’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 우리 국회는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만 결과보고서 제출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의 전반기·후반기 종료 시점에 위원회 활동을 종합한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결과보고서에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① 상임위원회의 수행 직무의 하나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명시하고 ② 상임위원회는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국정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활동보고서에 포함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6조).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제36조(상임위원회의 직무) ① -----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그 밖에----- -----.
<신 설>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의 직무수행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의장에게 제출한다.
<신 설>	③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정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에 국정감사의 주요 실시내용을 포함한다.

현행 「국회법」 제36조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로 공청회·청

문회 및 인사청문회 개최(「국회법」 제64조·제65조 및 제65조의2), 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국회법」 제121조),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국회법」 제128조), 증인·감정인 등의 출석 요구(「국회법」 제129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이에 부수한 직무 등(「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들 수 있음.

현행 국회관계법상 상임위원회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는 법률안·예산안 및 청원 등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 제출하는 심사보고서,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마쳤을 때 제출하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보고서, 인사청문회를 마쳤을 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있음.¹⁾ 즉, 상임위원회는 특정 안건 또는 사안에 관한 보고서는 작성·제출하나 직무수행 또는 활동내용 전반에 관한 보고서는 작성·제출하지 아니함.

특별위원회는 법률안·예산안 등 안건의 심사를 마쳤을 때 제출하는 심사보고서, 국정조사를 마쳤을 때 제출하는 국정조사보고서, 인사

1) 「국회법」 제66조(심사보고서의 제출)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심사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청원 심사·보고 등) 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감사 또는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증인 채택 현황 및 증인신문 결과를 포함한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②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경과보고서) ①위원회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는 보고서에는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청문회를 마쳤을 때 제출하는 심사경과보고서 외에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²⁾

[표-2]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작성 · 제출 보고서 현황

구 분	안전 심사	국정감사 ·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활동결과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	국정감사 · 국정조사 보고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국정조사보고서	심사경과 보고서	활동결과 보고서

한편,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국정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국정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처리³⁾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처리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제22대국회를 예로 들면, 2024년도에 실시된 국정감사의 경우 17개 중 2개 상임위원회가, 2025년도에 실시된 국정감사의 경우 5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2)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3) 국정감사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국정감사 결과 처리시한을 명시함(2023. 7. 11. 일부개정 · 시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표-3] 제22대국회 국정감사보고서 제출 현황⁴⁾

구 분	전체 상임위	제출 상임위	미제출 상임위
2024년도 국정감사	17개	15개	2개
2025년도 국정감사	17개	12개	5개

이에, 개정안은 안건 심사,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 상임위원회의 직무 수행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제출하되 국회가 국정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활동보고서에 포함하게 함으로써,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을 상임위원회 보고서 형태의 공식적 기록으로 남기려는 취지로 이해됨.⁵⁾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제도는 제19대국회 「국회법」 개정(2014. 5. 14. 일부개정·시행)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취지는 본회의 의결로 특정 기간 한시적으로 두는 특별위원회가 그 구성 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및 공개를 통하여 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었음.⁶⁾

이와 같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특별위원회와 달리 상설로 설치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에

4) 2026. 6. 30. 기준임.

5) 개정안은 상임위원회의 수행 직무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추가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활동보고서에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임.

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910329호), p.2

대해서도 활동보고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활동보고서를 ‘2년마다’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전반기·후반기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경우 「국회법」상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 기한을 준수하더라도 활동기간(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임기)이 2년에 미치지 못하고,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경우 상임위원 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면 전반기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활동기간이 2년에 미치지 못하게 될 여지가 있어,⁷⁾ 활동보고서 제출 시기인 ‘2년마다’의 의미에 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임.

또한, ‘2년마다’를 2년의 활동기간이 지난 후로 해석하는 경우 전반기 상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는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후반기 상임위원회의 활동보고서는 다음 입법기의 전반기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보임.

7) 「국회법」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1조(상임위원장) ③ 제2항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한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 활동보고서의 제출 시기를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일 ○일 전까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⁸⁾

문 의 처

02)6788-5017

8) 참고로, 「국회법」 제44조제6항은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활동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활동기간 종료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아니하는 특별위원회에 특정 의무의 이행을 부과하고 있는 모순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음.

「국회법」 제44조(특별위원회)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제86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하였거나 제66조에 따라 심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제3항 단서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을 말한다) 후 15일 이내에 활동결과보고서를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